

울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나16673 판결 [계약금등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나1667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가단103002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겸 피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성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구언수

변론 종결 2021. 1. 28

판결선 고 2021. 2. 18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가단103002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회사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1.의 가. 제3행 중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피고 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2쪽 '1. 기초사실'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F은 2013. 8.경 (가칭)D지역주택조합(이하 'D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이 후 행정용역비 800만 원,분담금 1,700만 원을 납부하였고,원고는 2014. 6. 26.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위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였다.

2015년경 D 조합이 해산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었고,원고는 2015. 10. 1. 이 사건 조합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조합에 행정용역비 500만 원과 분담금 3,8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8. 11. 7.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한 돈이 행정용역비 1,300만 원,분담금5,500만 원으로 합계 6,800만 원임을 확인해 주었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 5, 6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추가판단

피고 회사는, D 조합과 이 사건 조합은 별개의 조합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한 돈만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F의 조합원 자격을 승 계하기 이전에 F이 D 조합에 납부한 2,500만 원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갑 제1,2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F이 D 조합에 납부한 2,500만 원도 원 고가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한 돈에 포함되는 것이 상당하고,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 고가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한 금액을 전부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 조합의 해산과 이 사건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서면결의서(을 제4호증)는 사업규모와 행정용역사, 조합원의 분담금,시공예정사 변경으로 인하여 D 조합을 해산하고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위 서면결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과 피고 회사가 D 조합 및 G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계약을 승계'하고, 'D 조합원들은 탈퇴와 동시에 이 사건 조합원으로 가입계약서 작성과 분담금, 행정용역비를 납부하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 조합을 탈퇴하고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추가 납부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행한 입금확인증(갑 제2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한 돈이 6,800만 원이고 위 돈에는 F이 납부한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는 행정용역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환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진판사 신형철판사 안복열